

나. 종전의 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

### 3. 의견제출

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화학안전과 전화 044-201-683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(어진동) 환경부 화학안전과
- 팩스 : (044) 201-6830

### 4. 그 밖의 사항

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([www.me.go.kr](http://www.me.go.kr), 법령/정책 ⇒ 입법·행정예고란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● 환경부공고제2020-772호

「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7일

환경부장관

### 「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이 개정('20.10.1 시행)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자 중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공정안전보고서,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와 유사·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같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 내용

가. 장외영향평가서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 제출 같음 및 검토 생략(안 제5조, 제10조 개정)

나. 공정 위험성을 분석·평가하는 기법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시 적용하기 곤란한 기법들은 삭제·정비하여 유사제도와 불필요한 중복 오해 요인 제거(안 제23조 개정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화학안전과 전화 044-201-683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(어진동) 환경부 화학안전과
- 팩스 : (044) 201-6830

4. 그 밖의 사항

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([www.me.go.kr](http://www.me.go.kr), 법령/정책 ⇒ 입법·행정예고란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●여성가족부공고제2020-153호

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(대표자, 소재지)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020. 9. 7.

여 성 가 족 부 장 관

등록번호	단체명칭	사무소 소재지	대표자성명	최초등록일	주된사업	연락처	주관과	등록구분
여성가족부제44호	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	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6길 23	구수영	2013. 5.8.	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협력, 정책개발, 프로그램 연구개발,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	053-741-3122	권익기반과	변경등록

#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172호

「공항시설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7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#### 「공항시설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, 공항에 드론의 무단 침입을 금지하여 공항의 안